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정0698300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진 정 인 1. ○○○

2. ○○○

3. ○○○

피진정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서울특별시장

3. 부산광역시장

주 문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어 일상생활 유지 곤란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정인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된 경우 발생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 1, 2, 3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며 기본적 일상생활을 유지 하였으나, 65세가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아 최대 하루 4시간 요양서비스만을 받게 되어 식사지원 및 신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겨 삶을 이어 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에, 진정인들은 긴급구제를 요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 신체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으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을 주된 서비스 대상자로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은 요양서비스 중심의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제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되었다.

장애인 서비스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간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 재정부담 등에 대한 고려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경우 지원체계 변화에 따라 돌봄 사각 지대가 발생하여(예: 월 741시간을 받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 시 최대 월 102시간 정도로 급격히 지원 시간 감소), 활동지원 시간을 서울시 예산으로 2019년 170명분 월 50시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2020년 210명에게 '장애인고령 돌봄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며,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권역별 1개소씩 총 5개소를 지정하였다.

서울시는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중인데, '고령장애인에게 월 50시간 급여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유사한 서비스에 해당하게 되며 사회보장보험 급여를 해당 시간만큼 삭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여, 현재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은 28명이 발생할 예정이지만, 진정한 1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하루 4시간 외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장기요양급여는 최대치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등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각 진정인의 장애인 증명 및 서비스 현황자료, 서울시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계획안, 부산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계획안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은 1954. 7. 7.(여)생으로 지체장애인이다. 25년간 생활한 시설에서 2016년 탈시설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청장 관할의 ○○○센터로부터 하루 10시간씩 식사보조 및 신변처리,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생활한다.

그러나, 2019. 8. 15.부터 만 65세가 넘어 표준장기요양재가급여로 하루 4시간의 신변처리 및 가사활동 등 신체활동지원을 받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바, 4시간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나. 진정인 2는 1954. 8. 10.(남)생으로 지체장애인이다. 10년 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하여 서울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장 관할의 ○○○센터를 통하여 하루 24시간 신변처리, 식사보조,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아 2019. 9. 30.자로 하루 4시간의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인바, 하루 4시간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시설에 재입소하거나 홀로 방치되어야 할 상황이다.

다. 진정인 3은 1954. 6. 13.(남)생으로 지체장애인이다. 33년 전 사고로 중도장애인이 된 이후 서울시 ○○○에 거주하며, 서울○○○청장 관할의 ○○○복지관을 통하여 하루 18시간의 식사보조, 신변처리,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 활

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만 65세가 지나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식사보조, 신변처리 등 하루 3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나, 이에 불복하여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다.

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이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추가급여가 지급되어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마. 위원회는 2014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태조사 후 2016. 10. 6.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20대 국회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 맞추어, 2019. 7. 5.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법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나. 진정인 1, 2, 3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며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혼자서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이고, 진정인 1은 언어장애가 중복으로 있는 장애인이다. 이들은 모두 혼자 살아가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만 65세가 넘었거나 조만간 넘어간다는 이유로, 하루에 10시간, 24시간, 18시간씩 지원받던 서비스가 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위기에 놓였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이 든 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진정인들에게 하루 최대 4시간만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제대로 끼니를 챙겨먹지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진정인 1은 이미 그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욕창'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욕창은 한 번 발생하면 쉽게 낫지 않고 방치할 경우 발생한 부위를 도려내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며, 잠을 잘

때도 몸을 가누기 어려워 질식사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데, 서비스 공백으로 이러한 활동보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진정한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돌봄 책임에서 발생하는 위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겠으나, 국가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에 따른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근거 없는 연령기준을 설정하여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에 따른 돌봄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을 다시 시설로 복귀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로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상의 강요는 거의 평생에 걸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온 채 살아온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 추구권에 전제된 '자기결정권'과 같은 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장애인 거주시설로의 입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

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장애인복지법」 제53조),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고(「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장애인활동지원법 제3조) 등의 책무를 진다.

라. 진정한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진정한들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진정한들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정한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진정한들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에도 해당한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진정한들은 65세가 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진정한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중단 위기,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피해로부터 진정한들을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긴급구제 조치 권고가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9. 9. 25.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최 혜 리

위 원 정 문 자

위 원 이 상 철

<별지>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3.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7. 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39. 위원회는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보다는 “장애등급”에 따라, 그리고 장애당사자의 소득 보다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일부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비용을 산

정할 때 “장애 등급”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근거하고, 그리고 가족의 소득 보다는 장애당사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을 권고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